

의안번호	2215239
의 퇴 인	이개호 의원
회 답 일	2026. 1. 5.
추계번호	25C69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활동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3,800만원 (연평균 2,76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의3)	90	—	—	—	—	90	18
활동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의2)	9.6	9.6	9.6	9.6	9.6	48	9.6
추가재정소요	99.6	9.6	9.6	9.6	9.6	138	27.6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3 (활동지원 기본계획)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의무규정
2	안 제4조의2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활동지원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3 (활동지원 기본계획)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4조의2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의3)

-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수행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되, 추계기간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동 연구는 활동지원 관련자들의 관계에 기반을 둔 서비스 고도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2022년에 8천 9백만원 소요
- 추계결과, 5년 주기로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됨

[표 2]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의3)	90	-	-	-	-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활동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2)

-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 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서는 활동지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에 위원회 위촉직에 대한 회의수당만 있다고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위원 구성과 유사사례인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위원 수) 안 제4조의3은 위원회를 16인 이상 2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는 전체 위원이 16명이고, 이 중 보건복지부차관 및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12인인 것으로 가정(즉,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활동지원위원회 자격
 1.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활동지원인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회의수당 단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참석비,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비용 등을 고려하여 회당·인당 회의수당 단가는 20만원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대면회의 시 회당 20만원, 서면회의 시 회당 10만원을 지급
 -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 개최 횟수) 분기별 1회씩 연간 총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800만원으로 추계

[표 3] 활동지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 수	12	12	12	12	12	—	—
회의 횟수	4	4	4	4	4	—	—
회의수당 단가	0.2	0.2	0.2	0.2	0.2	—	—
추가재정소요	9.6	9.6	9.6	9.6	9.6	48	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